

의안번호	제3119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7. 10.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19호
----------	--------

제출연월일: 2026. 7. 10.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군민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다. 대피장소 지정, 대피표지판 설치, 대피안내요원 지정(안 제6조~제8조)
- 라. 대피명령 발령(안 제10조)
- 마. 강제대피조치(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 입법 예고안 | 개선 의견 | 검토 결과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 ○ 개선의견 불수용

-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며, 입법예고안이 개선의견을 제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3. “안전취약계층”이란 주민 등 중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3. -----

-----. | |
| <신 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의3에 따른 사람 | |
| <신 설> | 나. 임신·출산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 | |
| <신 설> |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 |
| <신 설> |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 <신 설> | 마. 그 밖에 시에서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 다만, 정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개선의견 불수용

- 제2조제3호의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므로 제5조의 개선의견도 불수용함 |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946호

가) 예고기간: 2026. 4. 30.~2026. 5. 2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고성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등”이란 경상남도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고성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주민 등 중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

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 등의 책무) 주민 등은 고성군의 재난 예방·대비·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피안내요원 운영) 군수는 주민 등의 신속한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9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주민 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성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대피명령 발령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및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대피조치)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 등

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법 제4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대피교육·훈련)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 등과 제8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확산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대피기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주민 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안전관리과장 이 형 호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0. 6. 8.]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신설 2020. 10. 12. 조 2583>